

# auri brief.

● 건축도시공간연구소

No. 67

2013. 05. 15.

##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 정책 · 제도 방안

유광흠 연구위원, 진현영 연구원

### ■ 요약

- 영국 범죄예방 환경설계(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, CPTED)의 주요 정책 · 제도
  - ‘설계를 통한 범죄퇴치’(Designing Out Crime) 정책 실시
  - 「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」(Crime and Disorder Act) 마련
  -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지침(Crime Concern, Safer Places :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등), 인증제(Secured By Design), 평가체계(Crime Impact Statements) 등 개발 및 활용

### ■ 정책제안

-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
  - 근거 법률,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지침 등 기준, 운영 기관 및 조직 형성, 범죄영향평가, 인증제 등 관련 제도의 단계적 마련을 통한 통합시스템 구축
- 세분화된 설계 기준 및 범죄예방 기능에 대한 기준 마련
  - 적용대상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계 기준 마련, 범죄예방 기능제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
- 건축계획과 범죄예방 운영주체의 협업을 위한 제도 구축
  - 건축계획 주체인 건축가와 범죄예방 운영자인 경찰 및 관련 전문 분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 마련

## 1 영국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의 정책 · 제도 개요

### ■ 주요 정책

- 영국 내무부(Home Office)의 ‘설계를 통한 범죄퇴치’(Designing Out Crime) 정책 실시
  - 영국 내무부(Home Office)에서는 ‘설계를 통한 범죄퇴치’(Designing Out Crime)를 통해 CPTED에 대한 정책 추진
  - 근거 법률, 설계 지침 마련, 연구지원 등 국가차원의 CPTED 정책 · 제도 실행
- 『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』(Crime and Disorder Act, 1998) 마련
  - CPTED가 영국의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체계 속에서 활용되는 근거 및 계기
  - 제17조의 범죄와 무질서 영향을 고려할 의무(Duty to consider crime and disorder implications)<sup>1)</sup>에 의하여 지방정부와 경찰은 모든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 시 범죄의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 부여
-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지침, 인증제, 평가체계 등 개발 및 활용
  - 방범인증제도인 디자인에 의한 안전(Secured By Design, SBD)를 통해 주로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을 도모하고, 도시계획(PPG, PPS)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(ex : Safer Places)을 개발

### ■ 관련 기관 및 조직

- 경찰지휘관협회 기술위원회(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s Technical Committee, 1992)
  - 범죄예방 설계부(Crime Prevention Design Group)로 불리며, 영국 각지에서 선출된 범죄예방 설계 자문위원(Crime Prevention Design Advisor)과 건축연락관(Architectural Liaison Officer) 위촉
  - CPTED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, 범죄예방 계획(Planning Out Crime) 등 발간
- 지역방범경찰관(Architectural Liaison Officer) 및 범죄예방 설계 자문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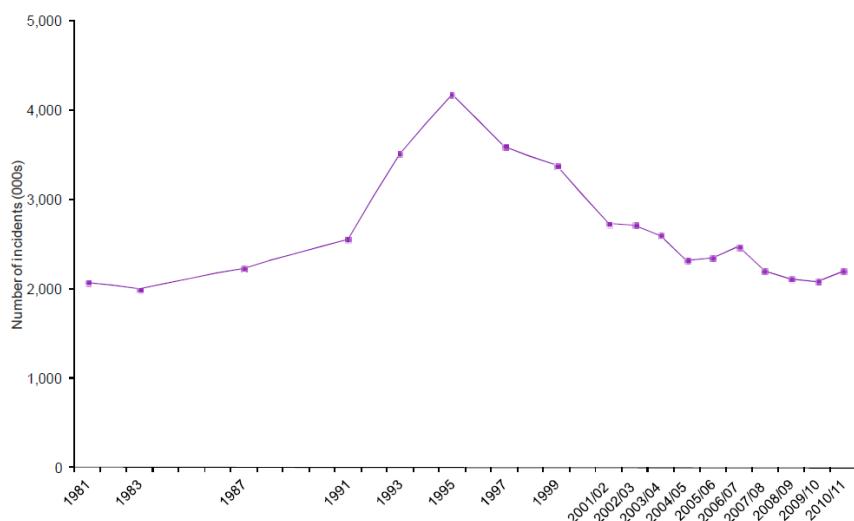
1) Crime and Disorder Act 제17조 “지방정부는 모든 업무에 있어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는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. 모든 정책, 전략, 계획 및 예산은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에 대한 기여라는 관점에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.” (Crime and Disorder Act, <http://www.legislation.gov.uk/ukpga/1998/37/contents>)

### (Crime Prevention Design Advisor)

- 『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』의 범죄예방 파트너십을 근거로 재개발이나 보수공사 그리고 각종 용도의 신규건축 개발에 대한 허가나 심사 절차에서 CPTED에 관해 자문
- 범죄와 무질서 감소 협의체(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s, CDRPs)
  - 『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의 범죄와 무질서 협의체(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s, CDRPs)를 통해서 지역 기관과 공공서비스가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요구

### ■ 범죄예방 효과

-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의 주요 정책 실시 후 범죄감소 효과
  - 영국 범죄조사(British Crime Survey) 결과를 보면 1980년대부터 총 발생 범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991년부터 1990년대 중반에 발생 범죄수가 최고에 달함
  - 영국 정부가 본격으로 범죄예방 정책을 평기 시작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0~2011년 발생 건수는 1995년 대비 거의 반 정도(47%) 감소. 이는 1995년 대비 건수로는 200만건, 희생자수는 75만명 감소
  - SBD 기준에 맞춘 건축물의 일반 건축물 대비 침입절도, 차량범죄, 손괴행위 등 범죄 및 무질서 문제 감소 효과가 입증됨(Brown, 1999; Armitage, 2000)



[그림] 영국의 범죄발생건수  
출처 : Home Office(2011), Crime in England and Wales, 2010/11

## 2 영국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의 주요 법 · 제도

### ■ 『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』(Crime and Disorder Act, 1998)

-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의 영국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체계 속 활용 근거
  - 제17조의 범죄와 무질서 영향을 고려할 의무를 통해 CPTED의 구체적 수행을 위해 해당 지역의 범죄수준과 패턴에 대한 진단(crime audit)을 바탕으로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종합전략(local crime and disorder strategy)을 수립하도록 함
  - 지방정부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예산 및 정책결정, 세부전략 수립 시 지역내의 범죄와 무질서 예방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하도록 의무화
- 지방정부의 능동적 범죄예방 노력 확산 및 협의체 형성
  - 자치단체별로 CPTED 지침서를 만들어 적용하고, 제17조에 따라 지방정부와 의회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되어 도시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
  - 지방의회에도 범죄예방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의회가 경찰과 협력하게 하는 등 경찰과 지방정부 각 부서 간 협력 증대
  -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의 협의체를 형성하여 종합전략 시행 후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시

### ■ 『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』 관련 지침

- Crime Concern
  - 영국 정부는 『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후속조치로 매뉴얼인 Crime Concern을 제작하고 구체적인 범죄예방 전략은 각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
  - 범죄발생률, 재범률, 실업률, 마약판매, 매매춘, 편부모 가정의 비율, 레저시설이 부족한 약 2,000개의 지역은 특별한 관심 요구
  -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성공적인 범죄 감소를 위해서는 건축과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전개를 권고
- Safer Places :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
  - 『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』과 지방정부법(Local Government Act)에 근거하여 2004년 부총리실(ODPM)에서는 도시계획 정책안(Planning Policy Statement, PPG 1)에 주요 내용으로 CPTED 개념 명시

- 세부시행규칙(companion guide to PPG 1)으로 Safer Places :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(「보다 안전한 장소 : 도시계획체계와 범죄예방」)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
-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

- PPG 1과 그 세부시행규칙을 근거로 각 지역 카운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들(경찰과 지자체)과의 구체적인 수평적 협의를 거쳐,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보충지침서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를 만들어 이를 각 자치단체별로 적용

## ■ 디자인에 의한 안전(Secured By Design, SBD)

- 공식적인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 제도<sup>2)</sup>

- SBD는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경찰지휘관협회인 ACPO(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)의 소관이며, 내무부,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부(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)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식적인 CPTED 제도임
- SBD는 CPTED의 원리에 근거한 물리적 요소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, 설치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, 화재 등의 재난에 관련된 요소 등도 통합적으로 접근
- 방범대책에 건축·도시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 출입구의 시건장치 설치규정을 중심으로 계획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의 정성적 평가를 통한 인증 시행
-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,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경찰에 SBD 인증 신청을 하면 CPTED 전문경찰관이 제출된 설계도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, 시공, 건축, 완공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후 CPTED를 점검하여 기준에 일치했을 경우 인증함
- SBD는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역의 경찰관이 검증하여 지역적 지침상 미비한 부분이나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반영

- 지정 용도별 세분화된 설계 기준 제시

- 기본원리로는 커뮤니티 안전 설계에 대한 핵심원리들로 통합적인 접근, 환경의 질과 소유감, 자연적 감시, 접근로와 보행로, 오픈 스페이스의 제공과 관리, 조명 기준 제시
- SBD의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용도를 선별하여 세분화

---

2) <http://www.securedbydesign.com/>

## SBD 기준 구분

- 주거 범죄예방(Crime Prevention-Your Home)
- 다층 주택(Multi-storey Dwellings)
- 신축 주택(New Homes 2010)
- 수리(Refurbishments)
- 편의시설(Sheltered Accommodation)
- 주차장(New Build Car Park Guidelines)
- 학교(Schools 2010)
- 병원(Hospitals)
- 허가된 대지(Licensed Premises)
- 놀이공간(Playing Areas)
- 청소년 및 운동시설(Youth Shelters and Sports Systems)

### • 주거 범죄예방(Crime Prevention—Your Home)

- 침입절도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간단한 노력으로도 줄일 수 있으며, 이러한 안전을 위한 투자는 자산에 가치를 부여하며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점을 강조
- 주택소유자와 사무실 입주자들에게 SBD 안전의 핵심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특정 유형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의 목록이나 추가적인 정보들을 연계하여 소개
- 효과적인 보안방법과 업무지구의 권고사항을 문, 자물쇠, 창문, 정원, 정문, 펜스, 주차장, 자동차, 경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, 화재 안전 및 안전 체크리스트 마련

### • 다층 주택(Multi—Storey Dwellings)

- 다층 주택에서의 기준은 저·중·고층 건물과 신축 및 기존 건물에 모두 적용되고, 반드시 신축주택(New Homes 2010)을 참고하도록 명시
- 공적 접근, 자연적 감시, 공식적 감시, 조명, 가로 조명, 경관, 경계, 주차 및 주차장, 건물 구조 및 내부 보안, 물리적 보안 사양, 창문을 주요한 요소로 다룸

### • 신축 주택(New Homes 2010)

- SECTION 01에서는 개발의 기획 및 설계(Planning Issues)를 다루고, SBD를 지원하는 정책과 전략지침, 도로와 보행로 배치, 우선도로와 쿨데삭, 보행로 설계(식재, 시설물, 조명), 공용 공간, 거주지 경계, 주차, 지하주차장, 식재, 가로 조명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제시
- SECTION 02에서는 물리적 안전으로 정문, 우편함, 공용 출입문, 창문 및 유리문, 주차장, 천장 조명, 주거 안전 조명, 온실, 침입자 경보, 다용도실, 건조실, 자전거 주차, 재택근무 등의 기준 명시

## ■ 범죄영향평가(Crime Impact Statements)

- 개발사업의 계획 결정 전 개발제안에 대한 범죄와 무질서 영향평가<sup>3)</sup>
  - 지방 정부의 요청에 의해 주요 계획에 적용되며 범죄영향평가(Crime Impact Assessments, CIS) 또는 디자인을 통한 범죄퇴치 평가(Design Out Crime Assessments, DOCA)로 불림
  - 2006년 맨체스터 경찰(Greater Manchester Police)과 맨체스터 도시계획청 (Manchester Planning Authorities)에 의해 시작되었으며, 이는 개발사업의 계획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개발제안에 대한 범죄와 무질서 영향평가
  - 범죄영향평가는 SBD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, 지방정부가 개발사업에 대한 범죄영향평가를 요구할 경우에 필요한 주변 범죄정보와 대상지에 따른 설계 고려사항 등이 설계팀에서 제공되며 CIS 평가팀이 평가 실시

## ■ 범죄에 대항하는 디자인(Design Against Crime, DAC)

- 디자인 전 영역에서의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<sup>4)</sup>
  - 내무부(Home Office), 유통산업부(the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), 디자인 위원회(Design Council)의 지원으로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항하는 디자인(Design against crime, DAC)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(environmental design)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 전 영역에서의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
  - 범죄 및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는 디자인을 위해 모든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를 장려하며, 디자인 전문가들의 창조적이고 섬세한 디자인에 의한 해결책(design-led solutions)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
  - 사용자의 불편함 없거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대책을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으로, CPTED의 적용 범주 확장

## 3 정책제안

### ■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

- 영국의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의 정책 · 제도적 근거가 되는 『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』(Crime and Disorder Act, 1998)과 같이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

3) <http://www.designforsecurity.org/crime-impact-statements/>

4) <http://www.designagainstcrime.org/>

### (CPTED)의 제도적 구축을 위한 법률 근거 필요

- 건축 및 도시분야 그리고 치안업무와 관련된 지침 등 기준을 제도화하고, 이를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 및 조직 형성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의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
-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에 대한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의한 안전(Secured by Design)과 같은 인증제를 마련하고, 필요시에는 범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도입 등 검토

### ■ 세분화된 설계 기준 및 범죄예방 기능에 대한 기준 마련

- 국내의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 기준을 도입할 때 적용대상 용도의 규모에 따라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, 범죄예방 기능제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 필요
- 용도별 세분화된 설계 기준과 기능에 대한 표준은 인증제 및 평가시스템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

### ■ 건축계획과 범죄예방 운영주체의 협업을 위한 제도 구축

-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는 치안에 환경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두 분야, 즉 치안업무와 환경설계 두 분야 간의 긴밀한 협업 필요
- 이를 위해서는 건축계획과 운영주체 간의 연계가 요구되며, 건축가와 경찰, 관련 전문 분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 업무의 효율적 수행 필요

유광흠 연구원(031-478-9649, khyu@auri.re.kr)

진현영 연구원(031-478-9634, hyjin@auri.re.kr)

